

조합원 및 출자금 규정 변경(안)

- 질문: 개인이 가입했을 때 대리인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
-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만나니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질문: 미리 얘기를 안하면 상황 발생 시 가족에게 연락하는 식으로?
- 빈고에서 파악 가능한 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
- 박수로 승인

조합원의 종류, 조합원 관련 규정 정리

평권조약 계획(안)

- 질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은?
- 답: 규정에 있다. 상임 활동가에게 연락을 줘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공동체에 배당된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약간의 한도 차이를 뒀다. 일반 조합원은 연간 3만 빈. 공동체 구성원(꼭 살지는 않아도 된다)은 연간 7만 빈.

평권조합 내용 정리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조합원 제명(안) 승인의 건(고구마 한 박스 먹는 기분,..)

- 질: 공동체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은?
- 질: 생존자가 긴 시간동안 조합원의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어느 순간이라도 불안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기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
- 답: 빈고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해당 공동체에서 격리 등 노력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부분
- 답(대책위): 지적인 부분은 대책위도 많이 고민했고, 대처를 위해 마을 차원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도 힘들기도 했지만 대책위도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공동체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동체 내부자가 아니게 된 상황에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남지 않고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가된 상황이 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그럼에도 가해자는 이 공동체를 방문하고. 피해자는 공동체를 생활권으로 두고 싶어했기 때문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가 올 수 없는 지역을 설정했지만,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침범하고, 그래서 무력을 동원하는 상황도 있었고...
- 답: 빈집 홈페이지에 내용이 올라와 있다. 결정문을 보면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의견: 빈마을 혹은 빈집 공동체 내의 대책위나 조치는 이해되는데, 빈고가 여기서 왜 제명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미 모든 조합 활동이 정지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좋은데, 여기서 제명까지 가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동체의 일이 아닌가.
- 답: 일단은 둘 다 빈고의 조합원이고, 빈고 차원에서.
- 의: 계속 가해자가 빈고 활동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빈고와 공동체를 분리하지 못하는 게?
- 의: 저는 이견이 있는데, 빈마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둘 다 빈고의 조합원이고, 빈고에서 물리적인 격리를 시켜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활동정지를 통해서 - 가해자가 보여주기 식으로 빈고 이용을 신청해서 그에 대응한 것인데, 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빈고에서는 그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는 면에서 빈고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 의: 빈마을에 이전에 이주노동자가 성폭력 가해상황에 있었는데 그때는 가해자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해결했었는데..
- 답: 소명 절차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이런 조치가 있을 거라는 통보를 했고, 이미 활동 정지 상태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답을 들었다. 그리고 가해자와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고 좌절된 경험들이 누적되었었다. 위 과정이 그게 누적되었던 기록. 적절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있을 수 있다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선언 차원에서, 이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의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 의견: 집에서 일어난 일을 빈고와 연관한다고 했는데, 빈마을에서의 일은 2016년에 정리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후의 가해 행위에 빈고가 경유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빈고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피해가 갔을 때 빈고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답: 더 나은 방안들에 대해서는 반성폭력 규약 모임에서 더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 질: 피해자가 빈고에 제명을 요청한 것인가?
- 답: 그렇다. 논의된 부분.
- 빈마을에서 제출했으면 제일 나왔겠지만...
- 답: 총회를 열 수 없으니 운영회의때 논의한 것. 빈고가 판단을 했다가 보다는 소속 빈마을에서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의견: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은행에서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제명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인 것. 관계와 신뢰를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했고, 제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질: 활동 정지는 어떤 의미였는지? 사과하면 해제가 가능한지?
- 답: 판단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의견: 빈집에 드나들 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빈고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 가해자의 1대 1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커뮤니티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이었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과 노력이 들어갔을지 생각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 반성폭력 규약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치유되는 방식을 거치면서.
- 의견: 제명안을 제출한 피해자인데, 말씀해주셨던 이것을 왜 빈마을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제명을 하는 식으로 해결해야하느냐. 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빈고에 요청할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 끝에 총회 직전에 요청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느루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빈고 조합원들과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빈고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는 빈마을에서 나간 이후에도 빈집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직접 나타나서 협박하며 빈고 소속 공동체들에 폭력을 자행했다. 제가 함께하고자 하는 빈고의 가치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명을 요청하였다. 빈고라는 조합 자체가 신뢰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제명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저도 빈고에서 이것을 신청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총회때 같은 지위의 평조합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했었던 이유로 여러 고민이 있어서 활동정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 신상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연락 오는 일들이 있어서 제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 여러 의견들과 피해자 의견도 있었으니 의결을 하면 좋겠다.
- 거수로 의결: 참여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